

---

第13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5年11月20日(月) 午後2時

場所 運營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議事日程協議의件
  2.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案
- 

審査된案件

1. 議事日程協議의件 ... 1面
  2.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案(吳廣烈議員 外 1人 發議) ... 2面
- 

(14時29分 開議)

○委員長 金洙福;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3回 定期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1. 議事日程協議의件

○委員長 金洙福; 議事日程 第1項 第13國 서울特別市議會 定期會 議事日程 協議의 건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第11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하

여 議長으로부터 第13回 定期會 議事日程에 대한 協議要請이 있었습니다.

參考로 이번 定期會의 主要日程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地方自治法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會期는 11月 20日부터 12月 27日까지 38日間으로, 이 期間 中 11月 21일부터 11月 29日까지 9日間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고, 11月 30日부터 12月 2日까지 3日間 市政質問이 있겠으며, 12月3日부터 16日까지 14日間 96年度 豫算案을 常任委의 豫備審査와 豫約特委와 綜合審査를 거쳐 本會議에서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議事日程案을 참고하여 주시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運營委員會 議事日程案

(뒤에 실음)

---

2.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案(吳廣烈 議員外1人發議)

(14時31分)

○委員長 金洙福;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年 7月 1日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施行令이 94年 3月 16日 與野 합의로 改正된 地方自治法 第32條의 立法趣旨에 어긋나서 그동안 全國 市·道議會 議長協議會 4회와 運營委員長協議會 4회 등 總 8회의 會議을 개최하여 우리 廣域議員의 懸案問題인 議員補佐官制 도입을 위한 請願書를 野3黨 총무의 소개를 받아 國會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國家事務의 地方移讓促求建議案을 關係機關에 제출하는 등 議員 권익신장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議政活動費와 會議手當 등의 支給問題는 전국 15個 市·道議會 중 서울을 포함한 3個 市·道議會만이 條例를 制定하지 아니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우리 地方議員의 뜻이 關係要路에 전달된 상태이며, 條例 未制定에 따른 會計處理上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또한 議員 여러분의 議政活動을 보다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條例를 制定한 후 議員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全國 市·道議會 議長協議會 및 運營委員長協議會가 합심하여 議員補佐官制 도입과 國家事務의 地方移讓 등 懸案問題에 대하여 國會, 中央政府 등 關係機關과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委員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發議者를 대표하여 吳廣烈委員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廣烈委員; 안녕하십니까? 國民會議 所屬 吳廣烈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同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에 앞서 提案經緯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年 7月 21日 全國 市·道議會 運營委員長協議會에서는 95年 7月 1日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施行令은 94年 3月 16日 與野 합의로 改正된 地方自治法 第32條의 立法趣旨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議政活動費와 會議手當 등의 수령을 거부키로 決議하여 이의 부당성을 各 市·道議會別로 言論과 地域住民을 상대로 적극적인 弘報活動등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7月 29日 全國 市·道議會 議長協議會 및 運營委員長協議會 連席會議에서 地方自治 關聯法令 中 自治權 沮害事項 등을 발취 취합한후 運營委員長協議會의 實務檢討와 議長協議會의 決議를 거쳐 關係要路에 그 改正을 촉구키로 하여 95年 9月 14日 仁川廣域市議會에서 개최된 全國 市·道議會 運營委員長協議會에서는 議員補佐官制導入促求建議案을 검토한후 議員補佐官制 導入 促求請願書를 國會 등에 제출키로 한 바 있으며, 95年 9月 22日 大田廣域市議會에서 개최된 全國 市·道議會 議長協議會 決議를 거쳐 市·道議會 議員 全員の 署名을 받은 후 95年 10月 17日 國民會議 辛基夏 議員, 民主業 李哲 議員, 自民聯 韓英洙 議員의 소개를 받아 國會에 請願書를 제출하여 國會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95年 10月 28日 全國 市·道議會 運營委員長協議會와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議長協議會에서 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를 未制定한 市·道議會에서는 현재 전국 15個 市·道議會 중 서울을 포함한 3個 市·道議會만이 關聯條例를 制定하지 아니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필요가 있고, 우리 地方議員들의 뜻이 關係要路에 전달된 상태이며, 議員들의 議政活動

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한 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의 未制定에 따른 會計處理上の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關聯條例를 制定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우리 議會에서도 오늘 議員懇談會를 개최하여 輿論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議員總會에서 여러분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議政活動費, 會議手當 등 支給에 관한 條例를 조속히 制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本 條例案을 提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提案事由를 말씀드리면, 1994年 3月 16日 地方自治法 第32條가 改正되어 地方議會 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議政資料의 蒐集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導하기 위하여 매월 議政活動費를 지급하고, 會期 中에는 會議手當을 지급하며,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여행할 때에는 旅費를 지급하되 그 支給基準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였고, 1995年 7月 1日 同法施行令 第15條가 改正되어 地方議員에게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會議手當 및 旅費의 지급기준과 범위를 명시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條例로 정하도록 委任됨에 따라 서울 特別市議會 議員에게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會議手當 및 旅費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議政資料蒐集·研究費 50萬원과 補助活動費 10萬원등 총 60萬원을 서울 特別市 公務員報酬 지급일인 통상 매월 20日에 지급하되, 最初任期 開始月이나 退職月 등 月單位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둘째, 會議手當은 會期

中 本會議 또는委員會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日 6萬원씩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非會期 中에 委員會 활동으로 인한 出席 및 年間 會期 總日數, 120日에 해당되겠습니다. 초과시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으며, 會議手當 支給基準은 速記錄과 연계하여 지급하므로 같은 날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중복하여 출석한 경우일지라도 1日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會期中 現地調査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會議手當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會議手當은 會期가 끝나는 날로부터 7日 以內에 지급토록 하였고, 셋째, 旅費는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실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同 條例案에는 旅費를 國內旅費, 國外旅費의 管內出張旅費로 구분하였습니다.

단, 管內出張旅費는 國內旅費 中 現地交通費와 食費만을 지급하되 官用車輛을 이용한때에는 旅費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國外旅費의 지급기준은 1995年 6月 10日 公務員國外旅費規程이 改正公布됨에 따라 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결과 宿泊費가 종전에 비해 5내지 15%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同 條例案은 地方自治法과 同法施行令에서 委任한 범위 내에서 議政活動費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만, 우리 市議員들이 名譽職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議政活動까지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로서는 同 條例案에 規된 議政活動費, 會議手當, 旅費 關聯 規定이 불만족스러운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實費補償的 수준의 議政活動費 적정화와 會議手當 지급기준 및 방법의 보완 및 議員補佐官制 도입 관련 補助活動費 등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위해서 모

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同 條例案은 第4代 議會의 任期開始日인 95年 7月 8日 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條例制定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고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洙福; 吳廣烈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梁在大; 안녕하십니까? 專門委員 梁在大입니다.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提案說明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同 制定條例案은 1994年 3月 16日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32條와 1995年 7月 1日 改正公布된 同法施行令 第15條가 규정한 범위내에서 議政資料蒐集·研究費와 補助活動費支給基準,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議長の 명에 의하여 公務로 여행할 때 지급는 여비, 會期中에 지급하는 會議手當 등의 支給基準과 方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條例自體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5條에 規定된 議政活動費 및 會議手當 등의 支給基準은 地方自治法 第32條第2項의 立法趣旨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감이 있어 議政活動의 위축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議政資料蒐集 研究費의 경우입니다.

第3代 市議會의 경우 內務部指針에 따라 每年 312萬원(기타 廣域議員 260萬원) 범위내에서 議政報告會費, 請願處理, 議案 資料蒐集등의 명목으로 實費補償的經費를 지급하도록 하였습 니다만, 이번 制定案에는 地方自治技術行令 第15條의 규정에 따라 年間 600萬원(月 50萬원)으로 인상되어 약 92%가 증가 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第3代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 들었고, 더구나 서울市議員에게 인정되던 特例(餘他 市·道議 員보다 20% 增額支給)마저 폐지되어 활발한 議政活動에 장 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議政資料蒐集을 위한 補助活動費에 관한 사항입니다.

市議員은 名譽職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서울市의 방대한 豫 算과 事務를 監視·監督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오히 려 議政活動을 보좌하여 줄 有給補佐會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第3代 議會에서는 議政治動을 지원·보좌하여 줄 立法補助官 制度의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온 결과, 中央政府에서는 명예직인 地方議員에게는 有給補佐官을 인정하여 줄 수 없다는 논리에서 議政資料蒐集을 위한 補助活動費를 지급함으로써 사실상의 補佐官制度를 도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內務部에서 책정된 補助活動費 10萬원은 당초의 立法精神과 유리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補助活動의 費用"은 議員補佐職員을 둘 수 있는 방 법과, 雇傭手當制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게 地方自治 專門家들의 견해이나 설사 雇傭手當制를 도입한 경 우라 할지라도 상식인의 기준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 다.

셋째, 會議手當에 관한 事項입니다.

同 條例案에 따르면 議員이 會期中 本會議또는 委員會에서



出席한 경우에 한하여 1日 計算하여 會議手當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會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당연하다손 치더라도 非會期中 委員會에 출석한다든가, 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 出張中이거나 지역내의 集團民願解決을위한 不出席 등 議員으로서의 職務遂行上 議會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와 職務遂行으로 인한 公傷 입원중인 경우 등에도 會議手當이 지급될 수 없도록 되었음은 물론, 第3代 議會의 "出席日費"制度下에서 허용되던 공휴일과 휴회 등을 포함한 "出席日數"의 개념이 깨짐에 따라 의정활동의 위축, 會議運營上의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금년 3月 6日부터 3月 22日까지 실시된 監査院의 대대적인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結果, 豫算의 방만한 운용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제약을 가한 결과로 보이나 一般公務員에게도 公傷에 따른 公暇를 인정하고 있는 터인바, 발전적인 방향으로 改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旅費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制定案 중에 國外旅費의 경우는 公務員國外旅費規程이 지난 6月 10日 改正公布되어 地方自治法施行令 改正前이라도 公務員 國外旅費 調整比率에 따라 條例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숙박비를 일부 상향조정하여 議員님들의 海外公務出張 旅行時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會議參席 旅費의 경우 地方自治法 改正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第3代 議員과 비교하면 형평성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條例案의 內容 中에는 議

員님들에게는 불만스러운 요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內務部 등 中央政府에서는 地方議員이 名譽職이라는 점, 地方財政의 壓迫要因이 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걸고있는바, 地方自治의 經驗이 일천한 우리 나라의 현실로선 地方自治의 根本趣旨를 皮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언론과 시민 등의 부정적인 시각을 염두에 두고 關係要路에의 建議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實費補償的 議政活動關聯費用을 現實化시켜 地方議員들의 住民代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地方自治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洙福; 吳廣烈 委員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 및 討論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意見 있으신 委員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炯莘 委員님 質疑하여 주십시오.

○崔炯莘 委員; 報告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開院된 지 4個月 정도 되었는데 그간 저희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議員活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議政活動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든가 補佐官制 등등.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함으로써 문제점들이 解決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原案대로 通過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洙福; 다른 委員님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

給에關한條例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構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金洙福; 바쁘신 중에도 會議에 참석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49分 散會)

---

○出席委員

金洙福 金洪奎 金聖浩 金鍾來

梁敬淑 吳廣烈 鄭鎭宇 鄭泰宗

鄭韓植 崔炯莘 黃仁明 金永禧

洪淳喆

○專門委員

梁在大